

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

※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건축명	
대지위치	
대지면적	지역·지구
건축면적	층수
그 총면적	용도
구조	공사종별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 (서명 또는 인)

중앙행정기관의 장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감 귀하

편의시설의 종류			설치대상		설치		미설치	특이사항
			의무	권장	적정설치	부적정설치		
매개시설	주출입구 접근로							
	장애인전용주차구역							
	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							
내부시설	출입구(문)							
	복 도							
	계단 또는 승강기							
위생시설	화장실	대변기						
		소변기						
		세면대						
	욕 실							
	샤워실 · 탈의실							
안내시설	점자블록							
	유도 및 안내설비							
	경보 및 피난설비							
그 밖의 시설	객실 · 침실							
	관람석 · 열람석							
	접수대 · 작업대							
	매표소 · 판매기 · 음료대							
	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							
종합의견								